



서울 행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등본입니다.

2011. 9. 29.

법원주사보 추 인



사 건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봉, 장경욱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권정호, 하주희

피 고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구정택, 정종륜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9. 30.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은 1991년 미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연합방위전력의 증강을 목적으로 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이하 'CDIP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11.경 주한미군측으로부터 평택시에 위치한 미군 오산공군기지(K-55) 내에 있는 기존의 활주로는 노후화 되었음을 이유로 기존 활주로 옆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CDIP사업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CDIP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9. 30. 주한미군측에게 이 사건 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내용은 크게, ① 제2활주로 건설 부지에 있던 군사시설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¹⁾(이하 '연합토지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

1) 위 협정은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합하여 주한미군 주둔여건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균형된 개발과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주한미군측이 28개기지 214만 평과 훈련장 5개소 3,900만 평을 반환하고 대한민국측이 신규로 4개 지역 87만 평을



국이 주한미군측에 전용공여 하기로 한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부근 지역(이하 '적봉리 부지'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이라 한다)과 ② 군사시설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활주로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한미군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CDIP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적힌 업무보고서를 받아 결재한 후 그 사실을 주한미군측에게 서한 형식으로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행위는 국가 간 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일종의 의사의 통지에 불과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공여하여 8개기지 대체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피고가 CDIP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한미군측에게 이 사건 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한다고 통보한 행위는 이 사건 사업을 SOFA협정 및 관련 합의서에 근거하여 CDIP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외부에 공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에게는 이 사건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건설되는 이 사건 활주로를 무상으로 공여받는 등의 제반 권리를 부여받는 일종의 형성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CDIP사업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한미군측으로부터 사업소요 제기를 받으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피고가 주한미군측에 CDIP사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일종의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면 원고들과 같은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 등 환경침해를 입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이와 같은 환경침해는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위 통지행위를 다투게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승인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 부분

가)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은 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1. 7. 25. 법률 제1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평택 특별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 이전되는 적봉리 부지는 연합토지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측에 '안전지역권'으로 공여된 부지인데, 연합토지협정에 의하면 안전지역권으로 공여된 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지역권으로 공여된 부지에 이 사건 군사시설물을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은 위 연합토지협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2) 이 사건 활주로사업 부분

가)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활주로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국방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전에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승인하면서 평택시장과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DIP사업의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은 1991년 미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하여 SOFA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한미간 연합방위전력의 증강을 목적으로 한 CDIP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CDIP사업은 국방부훈령인 CDIP사업 방침 및 절차규정(이하 'CDIP사업 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 그 구체적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번	내용	업무부서
1	주한미군측이 피고에게 사업소요제기	각군본부, 주한미군사
2	사업검토 지시	합동참모본부
3	사업검토(한·미 합동 현지정찰 포함)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사 등
4	사업심의위원회 상정	합동참모본부
5	의장, 장관 보고	합동참모본부
6	사업 추진지시, 통보	합동참모본부
7	예산배정	국제협력관
8	사업설계	주한미군사(미국동공병단)
9	한·미간 건설 MOU 체결	사업집행주관부서, 주한미군사
10	사업집행 승인	사업집행주관부서
11	사업집행, 재투자	사업집행주관부서, 사업집행관리기관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주한미군측은 2007. 11.경 피고에게 평택시에 위치한 미군 오산공군기지(K-55) 내에 있는 기존의 활주로가 노후화 되었음을 이유로 기존 활주로 옆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이 사건 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소요제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주한미군측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정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08. 9. 26. CDIP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9. 30. 주한미군측에게 이 사건 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통



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크게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과 이 사건 활주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위 각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

- 사업내용: 제2활주로 건설 부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를 2005.경 대한민국이 수용한 적봉리 부지[부지면적은 58.56 에이커(acre)로서 약 236,980㎡ 정도가 된다]로 이전하는 사업
- 공사기간: 2009. 8. 21. ~ 2010. 11. 20.
- 예상공사비: 75.6억 원

(2) 이 사건 활주로사업

- 사업내용: 패트리엇 포대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에 길이 2,744m, 폭 45.7m 규모의 제2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
- 공사기간: 2010. 12. ~ 2012. 12.
- 예상공사비: 890억 원

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의 진행경과

일자	사업내용
2008. 10. 8.경	적봉리 부지를 연합토지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측에 전용공여 함
2009. 7.경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승인함
2009. 8.경 ~ 2010. 11.경	대략 86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군사시설 이전을 완료함

(2) 이 사건 활주로사업의 진행경과

일자	사업내용
2010. 1.경	주한미군측 95% 설계 완료
2010. 6.경	주한미군측 100% 설계 완료
2010. 7.경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피고와 주한미군측간 협의
2010. 12. 17.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설계 확정
2010. 12. 22.	환경평가용역 입찰공고
2011. 12. 30.	이 사건 활주로사업 공사 입찰공고
2011. 1. 25.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자 선정 및 계약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14, 2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평택특별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정의를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택특별법 제6조 제1항에는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임이 명백한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이 위 평택특별법이 규정하는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은 평택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평택특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SOFA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협정'이라 한다) 및 연합토지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정에 따라서 시



행하기로 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또한 평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한 지원대책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6장 보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전반적인 법령 규정체계를 보더라도 제2장에서 규정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은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각종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이지 미군기지 이전과 전혀 무관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평택특별법 최초 제정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에도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정의하면서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정의하려는 것임'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제1면),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의 구성체계를 설명하면서 양 법안 모두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2장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제10, 43면),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협정 등을 통하여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지원하여야 할 미군기지의 주요 이전사업으로 ㉠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하여 평택지역에 52만 평을 확보하여 2008년까지 이전하는 사업, ㉡ 산재된 주한미군부대를 통합하기 위하여 연합토지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규부지 87만평을 공여하고 8개기지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 미2사단 재배치사업으로서 1단계로 한강이북 군소기지를 동두천·의정부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미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이남(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 223만 평을 확



보·추진하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제9, 10면).

(4) 그런데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은 기존 노후활주로 옆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군사시설물을 연합토지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측에 전용공여한 부지로 이전시키는 사업으로 미군기지이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나) 가사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이 평택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평택특별법 제6조 제1항에는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18가지 사업들을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



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18가지 사업별로 사업규모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평택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을 배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평택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해석된다.

(2)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도 '의안발의법안 제6조에 언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의 예외규정은 현재의 모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있어 군사상 기밀 보호 등의 필요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주한미군시설사업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제18면), 이를 보더라도 평택특별법 제6조 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3) 그런데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면적이 330,00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중 순번 16번의 가.),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58.56 에이커(acre, 약 236,980㎡)에 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이 연합토지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정지역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합토지협정 제6조 및 부록 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관리하는 탄약고와 재무장 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이내의 범위를 안정지역권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거나 대한민국이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안정지역권은 주한미군이 보유·관리하는 위험시설로부터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민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의 경우에도 패트리엇 포대 등 위험군사시설이 적봉리 부지로 이전·설치됨에 따라 그 위험군사시설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지역권으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이 그 구역을 주한미군측에 전용공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은 안전지역권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연합토지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지역권에 이 사건 군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연합토지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이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그 주변에 안전지역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적봉리 부지가 이미 설정된 안전지역권으로서 개발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전사업이 연합토지협정에 위반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우선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안에서 길이 2,743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다(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 중 순번 16. 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3조).

(2) 또한,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규율되는 SOFA 협정 및 부속합의서에서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합의의사록의 부록으로 작성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 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3) 다만, SOFA협정 제3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모든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양국간 정보교환, 공여구역 내의 출입, 합동실사, 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 평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합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동위원회의 협의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무조항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더욱이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피고가 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주한미군측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소요 제기 및 설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주한미군측에 전용공여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지역 밖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경피해를 입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사업승인권자이자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지역에 한하여 규율되는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만을 근거로 하여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환경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합동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측과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5) 주한미군측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성을 타진하는 공문을 받고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 내용(을 제9호증의 3)에도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한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 여부는 순전히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및 완료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사항이지 미합중국 정부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귀측이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주한미군측이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표현되어 있는바, 주한미군측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피고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을 뿐,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6) 피고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에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질의(을 제11호증)를 하였는데, 그 질의 내용에는 피고의 견해를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건설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시설 공사는 SOFA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밝히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SOFA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 추진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시설사업에서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 협의에 따라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견해에 따르더라도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활주로사업과 같이 국방사업법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까지 승인권자인 국방부장관 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



1항 [별표1] 중 순번 16.),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국방사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CDIP사업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달리 CDIP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를 승인한다거나 기본설계를 확정한다는 개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더욱이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한 설계는 주한미군측에서 모두 담당하였다) 위 조항을 문리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전에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환경영향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기인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는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1]에는 대부분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그에 준하는 시기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활주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실시계획에 준하는 시기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주한미군측에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방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우선 주한미군측이 피고에게 CDIP사업 소요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요(위치, 사업명, 공사비 견적 및 근거 등), 목적 및 필요성, 세부사업 소요내용, 기대효과, 한·미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CDIP사업 훈령 제8조), 피



고가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한 사업세부 검토결과 보고서(을 제1호증 3면 이하)에는 주한미군측이 소요제기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의 총괄적인 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 요도가 첨부되어 있는 바, 이는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에게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서류인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국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내지 3호) 등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그 외 국방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시에는 사업예정지안에 건물이나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 물건조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국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이는 추후 수용이나 협의 등 절차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미 주한미군에게 전용공여된 부지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시설물사업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고는 CDIP사업 훈령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국방사업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국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주한미군측이 이 사건 활주로사업 소요제기시 제출하도록 CDIP사업 훈령에 정하고 있는 자료 중에 사업개요 자료와 사업추진의 목적 및 필요성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였는데(을 제19호증의 1, 2), 그 내용을 보더라도 주요시설별로 필요량과 소요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도 세부사업 소요내용 관련 자료 형식으로 피고에게 제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측이 소요제기할 당시에 이미 이 사



건 활주로사업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DIP사업 훈령에 따라 주한미군측과 협의하면서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진행할 뿐(더욱이 이 사건 처분 직후에 바로 이 사건 활주로사업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시설물을 적봉리 부지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적봉리 부지를 주한미군측에 바로 전용공여하였다), 달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외부적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그러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환경침해를 구제받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보인다), CDIP사업 훈령에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 진행으로 환경침해를 받는 원고들과 같은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보장을 정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활주로사업 추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을 다룰 수 있게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4) 또한 주한미군측은 200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소요제기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08. 9.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주한미군측에서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한 설계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주한미군측이 2009. 2. 6. 작성한 '07년도, CDIP사업 제2활주로 설치, 오산비행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활주로사업의 경우 설계기간을 2007. 8.부터 2009. 4.까지로 예상하고 있고(갑 제1호증의 14면), ㉡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8. 3. 5.자 주한미군신문에도 이 사건 활주



로사업 설계가 30%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8호증의 1, 2)],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98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활주로사업이 특별한 통제장치 없이 CDIP사업 훈령에 따라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을 CDIP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추단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국방사업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이미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규정된 CDIP사업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점, ② 반면에 국방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의 법적근거 및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이미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적용되는 근거법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는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는 국내 법률이 있다면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평택시장과 국방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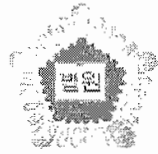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활주로사업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지역 내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국내법인 국방사업법에 정한 절차가 아닌 SOFA 협정 및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CDIP사업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SOFA협정 및 부속합의서에는 국내의 환경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활주로사업의 경우에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사안 자체의 특수성이 있는 점, ②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CDIP사업 훈령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워 과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도 '기존 공여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에서는 SOFA협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해석되고 있다'는 취지로 표현하고 있고(갑 제12호증의 제17, 18면), 주한미군측에서도 '미합중국측은 SOFA협정에 따라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을 제4호증의 2), 피고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활주로사업 부지 내 출입 등 문제로 주한미군측과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등 주한미군측의 협조가 없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주한미군측으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한 확정된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직후인 2010. 7.경 주한미군측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를 하였고 현재 주한미군측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활주로사업 공사도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충



분히 반영시킨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

 판사 이춘근 _____

 판사 이창은 _____



<별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시설과 구역-보안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모든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대한민국은 한봉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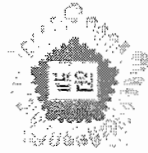
제2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약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2007. 4. 2. 발효 조약 제1844호)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부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

제2조

이 협정은 2007년과 2008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을 결정한다. 2007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7,255억원이다. 2008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 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1. 7. 25. 법률 제1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진지)구축시설



5.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및 고시등)

- ①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시계획승인 신청등)

-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
 4. 사업예정지안에 건물이나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건조서



5. 사업예정지안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6. 법 제7조 각호에 규정된 협의·허가 또는 해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7.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제6호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 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3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p>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비행장의 신설</p> <p>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p> <p>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p> <p>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p>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군부대의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방공)기지·군용 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2조(목적)

이 협정은 주한미군기지협정, 특히 동 협정 제2조 내지 5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원칙을 규정하고 동 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일정을 약속하며, 당사국이 동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절차 및 조건을 설정한다.

제6조(안전지역권)

당사국은 안전지역권 안에서의 구조물건설이나 다른 종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탄약고 및 재무장지역 주변의 안전지역권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이는 주한미군 군사기지의 안이나 그 주위의 탄약고 및 재무장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민간시설 및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또한 미국은 안전지역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탄약저장구역의 조정 및/또는 통합과 같은 선정된 안전지역권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우선순위가 정하여진 안전지역권의 목록은 부록 다에 규정된다.

부록 다(안전지역권)

1. 일반규정

이 부록은 미국 소유의 탄약을 보관하는 탄약저장소나 탄약보관소로 지칭되는 탄약고 주위에 제한적인 안전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이 부록은 국민보호를 위하여 불가침의 안전지역권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거나 개발을 규제하는 다른 적합한 제한이 요구되는 탄약저장소들을 지정하여 이들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상급·중급·하급의 순위로 분류한다.

3. 안전기준

안전지역권이란 인원 및 구조물이 폭발구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명시적 거리이며, 실제 폭발물, 탄약의 양 및 그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공여하는 제한적 안전지역권의 공여를 대신하여 개발을 규제하는 적절한 제한을 통하여 위험구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그 목표는 이러한 구역에서 개발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의 제기)

- ① 연합방위력증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중 미측 단독사용 시설물에 대한 소요제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합참으로 소요제기한다.
- ② 한측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한·미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사업소요 제기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별로 사업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한·미간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소요제기 한다.
- ③ 사업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합동참모의장(참조: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요

- 가. 제기부서
- 나. 위치, 사업명
- 다. 사업개요
- 라. 공사비 견적 및 근거

2. 목적 및 필요성

3. 세부사업 소요내용

4. 기대효과

5. 한·미 협의내용(필요시)



6. 기타

제9조(사업의 검토)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기된 사업계획을 사업집행주관부서의 장, 사업관련 부서의 장 및 사업집행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장, 사업관련 부서의 장,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제기의 타당성
2.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완전성
3.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추진가능성
4. 통합전력에 입각한 타 사업과의 관련성
5. 연합방위전력 증강 기여도
6.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③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참, 사업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 부서, 사업집행 관리기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사업 담당자는 합동 현지정찰을 실시한다.

제10조(사업심의 및 확정)

사업의 심의 및 확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 합동참모의장은 제기된 사업계획을 검토·종합하고,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2. 사업확정
 - 가. 사업심사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장기 활용대책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나. 사업심의는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합동참모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다. 합동참모의장은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라. 획득정책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전력투자사업 계획에 통합하고 대통령의 재가 등 사업확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마.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 바. 합동참모의장은 확정된 사업을 사업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부서, 사업집행 관리기관 및 주한미군사령부에 통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사.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집행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한다. (끝)